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47호 2017. 12. 8(금)

선 람	기관의 장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7-141호 남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1
- 남원시 고시 제2017-142호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사업) ----- 2
- 남원시 고시 제2017-143호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덕음산 철쭉공원 조성사업) ----- 3
- 남원시 고시 제2017-146호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4

광고

- 남원시 공고 제2017-1624호 아영 신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보상계획 공고 ----- 9
- 남원시 공고 제2017-1629호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 ----- 16
- 남원시 공고 제2017-1630호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93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17 - 141호

남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수립한 『남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에 의거 승인받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7년 12월 08일

1. 열람내용 : 남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가. 계획위치 : 남원시 동충동, 죽향동, 금동 일원(A=1.12km²)

나. 계획기간 : 2016 ~ 2020

다. 주요내용 : 쇠퇴의 원인 및 양상 진단,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 재원조달, 예산 집행계획 등 주민 참여 방안 등

2. 열람기간 : 2017. 12. 8. ~ 2018. 1. 8.(32일간)

3.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3층)

4. 관계도서 : “계재 생략”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남원시 고시 제2017- 142호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사업)

덕음산 오감만족숲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7년 12월 8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사업

2. 사업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남원시 어현동 37-147번지 외 10필지

나. 사업규모 : 조경 및 기타시설 12,86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산림과)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2,864						
1	노암	439		원	2,086	526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2		439	18	원	3,008	76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3		439	15	원	13,577	296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4		438		전	793	59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5		435		전	1,608	6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6		810	3	구	764	22	건설부			-	-	-
7		산9	2	임	22,847	2,043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8	어현	37	150	원	5,372	354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9		37	147	원	15,405	8,283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10		37	178	원	63,622	1,146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11		271		원	770	53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남원시 고시 제2017- 143호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사업)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7년 12월 8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사업

2. 사업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남원시 어현동 37-99번지 외 1필지

나. 사업규모 : 조경 및 기타시설 3,7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산림과)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 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	어현	37	99	원	267,956	3,753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
2	신촌	437	3	원	39,054	27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	-	-	-

남원시 고시 제2017-146호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노암동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7년 12월 8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나. 사업의 명칭 : 공동주택(아파트)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2. 사업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남원시 어현동 603-5번지 일원

나. 규 모

- 종로 2-21호선(B=15m, L=322m, A=5,050m²)

- 종로 3-31호선(B=12m, L=320m, A=4,418m²)

- 녹지 (연결도로 포함) 1,499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경남 김해시 변화1로67번길2 남명프라자 8층

- 성 명 : 남명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병열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인가일로부터 ~ 2018. 3. 31 ⇒ 인가일로부터 ~ 2020. 0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변경) : 따로붙임

6. 실시계획인가 관련도서 : 실음생략. 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일원

일련 번호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중로3-31	중로2-21		녹지	연결도로	계	성명	주소	
						도시계획	도시계획 외						
1	노암동	603-5	전	161	161	-	-	-	-	161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변화1로67번길 2, 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2	노암동	604-1	전	67	67	-	-	-	-	67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변화1로67번길 2, 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3	노암동	625-4	전	60	60	-	-	-	-	60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변화1로67번길 2, 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4	노암동	636-11	전	78	-	68	-	-	-	68	국(재무부)		
5	노암동	834-0	전	34	-	34	-	-	-	34	국(재정경제부)		
6	노암동	834-6	전	7	-	7	-	-	-	7	국(재정경제부)		
7	노암동	609-16	답	89	89	-	-	-	-	89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변화1로67번길 2, 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8	노암동	612-12	답	33	33	-	-	-	-	33	남원시		
9	노암동	612-16	답	13	13	-	-	-	-	13	남원시		
10	노암동	612-22	답	162	162	-	-	-	-	162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변화1로67번길 2, 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11	노암동	612-23	답	50	50	-	-	-	-	50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변화1로67번길 2, 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12	노암동	612-4	답	213	213	-	-	-	-	213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변화1로67번길 2, 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13	노암동	616-13	답	28	28	-	-	-	-	28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변화1로67번길 2, 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14	노암동	616-14	답	13	13	-	-	-	-	13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변화1로67번길 2, 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15	노암동	635-2	답	8	-	1	-	-	-	1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변화1로67번길 2, 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16	노암동	636-2	답	23	-	23	-	-	-	23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변화1로67번길 2, 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17	노암동	638-5	답	132	-	132	-	-	-	132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변화1로67번길 2, 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18	노암동	638-6	답	42	-	42	-	-	-	42	국(국토교통부)		
19	노암동	807-146	답	51	-	51	-	-	-	51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변화1로67번길 2, 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20	노암동	807-161	답	427	-	-	-	373	54	427	국(국토교통부)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중로3-31	중로2-21		녹지	연결도로	계	성명		주소
						도시계획	도시계획외						
21	노암동	826-7	구	111	111	-	-	-	-	111	국(농림축산식품부)		
22	노암동	834-2	구	103	-	31	-	-	-	31	국(농림축산식품부)		
23	노암동	산56-1	임	3,430	41	-	-	-	-	41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번화1로67번길 2, 8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24	노암동	603-6	대	143	143	-	-	-	-	143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번화1로67번길 2, 8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25	노암동	608-4	대	1	1	-	-	-	-	1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번화1로67번길 2, 8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26	노암동	608-5	대	12	12	-	-	-	-	12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번화1로67번길 2, 8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27	노암동	624-4	대	81	81	-	-	-	-	81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번화1로67번길 2, 8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28	노암동	629-4	대	66	66	-	-	-	-	66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번화1로67번길 2, 8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29	노암동	642-1	대	86	86	-	-	-	-	86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번화1로67번길 2, 8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30	노암동	643-3	대	65	65	-	-	-	-	65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번화1로67번길 2, 8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31	노암동	644-3	대	240	240	-	-	-	-	240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번화1로67번길 2, 8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32	노암동	644-5	대	21	-	-	-	21	-	21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번화1로67번길 2, 8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33	노암동	645	대	400	239	-	-	79	-	318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번화1로67번길 2, 8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34	노암동	826-20	대	41	41	-	-	-	-	41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번화1로67번길 2, 8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35	노암동	834-3	대	9	-	8	-	-	-	8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번화1로67번길 2, 8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36	노암동	597-92	도	8,521	1,154	-	-	-	-	1,154	남원시		
37	노암동	607-4	도	2,409	667	-	-	-	-	667	남원시		
38	노암동	616-2	도	727	113	-	-	-	-	113	남원시		
39	노암동	624-3	도	6	6	-	-	-	-	6	주식회사 신한주택개발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227-3	
40	노암동	625-2	도	39	25	-	-	-	-	25	남원시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중로3-31	중로2-21		녹지	연결 도로	계	성명		주소
						도시계획	도시계획외						
41	노암동	625-3	도	10	4	-	-	-	-	4	남원시		
42	노암동	629-2	도	7	4	-	-	-	-	4	남원시		
43	노암동	630-2	도	231	178	-	-	-	-	178	남원시		
44	노암동	635-1	도	95	-	11	-	-	-	11	남원시		
45	노암동	636-9	도	79	-	58	-	-	-	58	국(국토교통부)		
46	노암동	643-2	도	49	3	-	-	-	-	3	남원시		
47	노암동	823-12	도	34	34	-	-	-	-	34	국(국토교통부)		
48	노암동	823-13	도	58	6	-	-	-	-	6	국(국토교통부)		
49	노암동	823-14	도	8	7	-	-	-	-	7	국(국토교통부)		
50	노암동	833-0	도	4,672	202	1	-	-	-	203	국(국토교통부)		
51	노암동	636-10	잡	136	-	136	-	-	-	136	남명산업개발(주)	김해시 변화1로67번길 2, 803호(대청동, 남명프라자)	
52	노암동	636-12	천	14	-	14	-	-	-	14	국(국토교통부)		
53	노암동	636-4	천	28	-	19	-	-	-	19	국(국토교통부)		
54	노암동	636-5	천	208	-	207	-	-	-	207	국(국토교통부)		
55	노암동	807-1	천	142,930	-	29	-	-	-	29	국(국토교통부)		
56	노암동	807-157	천	52	-	14	-	-	-	14	국(국토교통부)		
57	노암동	807-58	천	5,531	-	3,663	-	-	-	3,663	국(국토교통부)		
58	노암동	636-6	제	112	-	112	-	-	-	112	국(국토교통부)		
59	노암동	636-7	제	35	-	35	-	-	-	35	국(국토교통부)		
60	노암동	807-148	제	219	-	-	140	67	12	219	국(국토교통부)		
61	노암동	807-159	제	288	-	117	97	74	-	288	국(국토교통부)		
62	노암동	807-160	제	819	-	-	-	779	40	819	국(국토교통부)		
합 계				173,817	4,418	4,813	237	1,393	106	10,967			
						5,050							

남원시 공고 제2017 - 1624 호

남원시 아영 신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 월 8일

남 원 시 장 인

아영 신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보상계획 공고

1.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보상 계획면적	사업 시행자
아영 신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L=350m B=8m	24필지 2838.1㎡	남원시장

2. 보상방법 : 현금 일시불 지급(계좌입금)

3. 보상시기 : 2018. 3월 ~ 2018. 5월

4. 보상절차 : 보상계획 통보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 확정통지
→ 협의 → 소유권이전 → 보상금 지급

5. 열람기간 : 2017. 12. 11. ~ 2017. 12. 26.(16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건설과 ☎063)620-6535, 해당면사무소

7. 열람내용 : 편입용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게재생략)

8.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9. 기타사항(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시, 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씩 추천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 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나.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 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 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인감날인	전화번호 (주택및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토 지 조 서

□ 공 사 명 : 아영 신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구분	토지 소재지			모번지	지목	면적	편입번지	면적	소 유 자		비 고
	시	읍면	동리						주 소	성 명	
1	남원	아영	월산	950	답	1,643.4	950-1	468.8	남원시 노암동 2**	심영*	
2	남원	아영	월산	955-1	답	1,904.2	955-12	121.2	남원시 아영면 구지길 38--*	류두*	
3	남원	아영	월산	955-2	답	3,026.1	955-13	124.1	남원시 아영면 신지길 39-***	정세*	
4	남원	아영	월산	955-3	답	3,027.9	955-14	95.3			
5	남원	아영	월산	955-4	답	2,963.4	955-15	90.3			
6	남원	아영	월산	955-5	답	2,075.9	955-16	62.3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4**	유채*	
7	남원	아영	월산	955-6	답	963.7	955-17	32.8	남원시 아영면 청계길 *	윤형*	
8	남원	아영	월산	955-7	답	3,008.5	955-18	96.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543-2성원무지개아파트1-***	김창*	
9	남원	아영	월산	955-8	답	2,935.6	955-19	90.7	남원시 아영면 봉화산로 840-***	정해*	
10	남원	아영	월산	955-9	답	873	955-20	26			
11	남원	아영	월산	955-10	답	1,903.5	955-21	73.8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3**	김철*	
12	남원	아영	월산	955-11	답	1,392.5	955-22	100.8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3**	정인*	
13	남원	아영	월산	956-1	답	2,257.4	956-14	164.3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3**	황봉*	
14	남원	아영	월산	956-2	답	2,941.7	956-15	194.4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41.101동***호	오원*	

토 지 조 서

□ 공 사 명 : 아영 신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연번	토지 소재지			모번지	지목	면적	편입번지	면적	소유자		비고
	시	읍면	동리						주소	성명	
15	남원	아영	월산	956-3	답	2964.7	956-16	162.1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3**	유종*	
16	남원	아영	월산	956-4	답	2963.9	956-17	139.8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5*	정지*	
17	남원	아영	월산	956-5	답	1108.3	956-18	58.종14.525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3**	오재*	
17	남원	아영	월산	956-5	답	1109.3	956-18	58.종14.525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3**	오영*	
17	남원	아영	월산	956-5	답	1110.3	956-18	58.종14.525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3**	오병*	
17	남원	아영	월산	956-5	답	1111.3	956-18	58.종14.525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3**	오정*	
18	남원	아영	월산	956-6	답	1910.2	956-19	102.5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1**	유종*	
19	남원	아영	월산	956-7	답	2965.6	956-20	152.7	남원시 아영면 신지길 39-**	김기*	
20	남원	아영	월산	956-8	답	2981.5	956-21	150.8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3**	박기*	
21	남원	아영	월산	956-9	답	2948.7	956-22	131.9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3**	정인*	
22	남원	아영	월산	956-10	답	2090.4	956-23	40.5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4**	유채*	
23	남원	아영	월산	958	답	714.4	958-1	78.9		국(기획재정부)	
24	남원	아영	월산	959	답	4319.7	959-1	79.2	남원시 아영면 구지길 3*-**	조용*	
								2,838.1			

물 건 조 서

□ 공 사 명 : 아영 신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순번	소재지		지 번	물 건 명	상 황 및 구 조 (m)	평 인 수 량 (㎡)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아영	출산	950	광장		200m			
				갯나무		6주			
				향나무		10주			
				간판		2식			
				조경표		1식			
				마을표		1식			
2	아영	출산	857-16	광장		16주			
3	아영	출산	956-9	관정		1기			
				하우스	28*7	196			
				프토나무		45주			
4	아영	출산	955-11	광나무		2주			
				사과나무		2주			
				하우스	6.5*25	162.5			
				프토나무		10주			
				프토시멘		30m			
6	아영	출산	955-10	프토나무		21주			
				프토시멘	4.5*21	94.5			
7	아영	출산	955-8.9	프토나무		39주			
				프토시멘	4.5*36	145.8			
8	아영	출산	955-6	관정		1기			
9	아영	출산	955-4	프토시멘	7.5*29	217.5			
				프토나무		40주			
				관정		1기			
10	아영	출산	956-3	관정		1기			

				프로시콜	4*20	80		
				프로나무		21주		
				블랑크		1식		
				하우스	2*7	14		
11	아영	출산	956-7	민원청고	4.2	8		
				관정		1기		
				정화조		1식		
				블랑크		1식		
				하우스(외양장)	7*16	112		
				하우스	7*8*8	168		
12	아영	출산	989	출판		230주		
				향나무		10주		

남원시 공고 제2017 -1629호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중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 (안 제2조)
- 총무국장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 (안 제3조)
- 징수관·재무관의 직무위임사항 개정 (안 제4조, 안 제5조)
- 기획실장은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

정) 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인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18조, 안 제19조)

-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 (안 제34조)
-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 (안 제39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자금 배정) 업무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이 본청 실·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제1관서 장에게 세출예산 한도액을 통지 (안 제48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필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50조의4)
 - ▶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 ▶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 (안 제56조, 안 제57조, 안 제108조, 안 제110조부터 안 제113조까지)
 - ▶ 송금지급명령 ⇒ 계좌지급명령
 - ▶ 통상지급명령 ⇒ 현금지급명령
-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하도록 변경 (안 제74조)
-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는 재정과장이 총괄, 금고의 검사는 재정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 (안 제120조)

나.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보완

-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 (안 제34조의2)
-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추가 (안 제54조)

-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21조)
-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를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명
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 (안 제128조)

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신설 (안 제156조~안 제162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정비

-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 “농림수산식품부” 을
→ “농림축산식품부” 로 개정

마.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

- “지참” 을 → “지각”
- “불입” 을 → “납입”
- “계기” 을 → “열거” 로 개정

바. 서식 정비

- (계좌·현금)지급명령(별지 제17호서식) 등 9개 개정
-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집합지급금액 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
단체 재무회계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2. 4. ~ 2017. 12 . 26.(22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각각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를 “이”로, “공무원을 말한다”를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계책임관 : 총무국장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 처리)

제3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 “양여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를 “1억원 이하인 공사”로,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나”를 “5천만원 이하인 공사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를 “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백만원”을 “3천만원”으로, “2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물건”을 “500만원이하 물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백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단서 중 “재정과장”을 “총무국장과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법 제44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로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 “관서”를 각각 “제1관서”로 한다.

제14조 중 “관서”를 “제1관서”로 한다.

제15조 제3항 중 “기획실장은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 제45조”로, “관서의”를 “제1관서의”로 한다.

제16조 중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을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관서”를 “제1관서”로, “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징수계획서”로,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 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집행·지출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관서의”를 “제1관서의”로, “배정계획서”를 “분기별 배정계획서”로, “관서의 장”을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서”를 “제1관서”로 한다.

제19조 제2항 본문 중 “관서의”를 “제1관서의”로, “지출원, 재정과장”을 “통합지출관, 지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재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재정과장, 제1관서의 장 및 읍·면·동에”를 “기획실장 및 통합지출관에게”로 한다.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91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재정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 실·과장 및 관서의”를 “통합지출관, 주관 실·과장 및 제1관서의”로 한다.

제26조 중 “검사”를 “이상 검사”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을 명시이월,”을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으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를 “날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으로, “날로부터 30일”을 “날부터 10일”으로, “지출원, 재정과장과 관서”를 “통합지출관, 지출원 및 제1관서”로 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중 “관서”를 각각 “제1관서”로, 같은 항 중 “지출원”을 “통합지출관, 지출원”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관서”를 각각 “제1관서”로, 같은 항 중 “지출원”을 “통합지출관, 지출원”으로 한다.

제30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의2”를 “영 제12조”로, “영 제59조의3”을 “영 제14조”로 한다.

제31조 중 “관서”를 “제1관서”로 한다.

제34조 제1항 전단 중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월 1일”을 “다음연도 2월 10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 중 “영 제78조”를 “영 제23조”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 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43조 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을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영 제84조”를 “영 제30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재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관서”를 “제1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관서의 장에게”를 “통합지출관, 제1관서의 장에게”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재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관서”를 “제1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관서의”를 “제1관서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본청 재정과장은 세출예산”을 “통합지출관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을 “통합지출관, 지출원 및 출납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잘생”을 “발생”으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4조”를 “영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제50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을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수입대체경비, 개산금”을 “개산금”으로,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을 “선금급 지급”으로 한다.

제56조 전단 중 “(송금·집합)지급명령”을 “(계좌·현금)지급명령”으로, “약식”을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을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를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영 제97조제2호”를 “영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영 제27조”를 “영 제26조”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재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관리는 재정과장”을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84조 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을 “영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금고”를 “시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으로 한다.

제85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 중 “시금고”를 “시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으로 한다.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한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 제2항 중 “인계·인수한 날짜와 “인계·인수를 마침”이라고 적어”를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적고”로 한다.

제9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를 “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3조”를 “영 제49조”로,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고설치약정”을 “금고설치지정”으로, “영 제102조 및 제103조”를 “영 제48조부터 제49조 규정”으로 한다.

제103조 제1항 중 “지출원의”를 “출납원의”로 한다.

제106조 제3항 중 “현금불입”을 “현금납입”으로 한다.

제108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을 “현금지급명령을”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완료”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완료”라고 기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0조 전단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1조를 삭제한다.

제112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를 “현금지급명령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서의 기재사항”을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적은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감독”을 “관리·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6조”를 “영 제50조”로, “재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 예규)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로”를 “(행정안전부 예규)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로, “통한 구매의”를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단서 중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백만원 이하 영수인은”을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 본문 중 “금고에”를 “시금고에”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금고에”를 “시금고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을 “동일회계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고에”를 각각 “시금고에”로 한다.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본청 재정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본청 재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2조 중 “시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1조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갖춰 두고 같이 쓸 수 있다.

제150조제1항 중 “법 91조”를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9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보칙”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으로 한다.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를 각각 제163조부터 제167조까지로 하고, 제156조 및 제15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을 말한다.

1.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계공무원
3. 제1호와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제157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

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65조(중전의 제158조) 중 “관한 사항은 법 및 영과”를 “관하여는”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8조 및 **제15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재정보증 한도액) 제1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5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1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58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한다.

제167조(중전의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장에 제160조부터 제16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1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려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62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제163조 앞에 “제11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지 제17호, 제34호, 제35호, 제50호의1, 제55-1호, 제57호, 제58호, 제62호, 제63호, 제63-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55호, 제8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원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9조, 제19조제3항, 제21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③ 남원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및 제111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④ 남원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정한다.

⑤ 남원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⑥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⑦ 남원시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⑧ 남원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항 중 “계기”를 “열거”로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 분 조 직	예산과목					공사기간	예산 액	공사비			시도비			보상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 목	통계 목			예산 액	집행 액	이월 액	예산 액	집행 액	이월 액	예산 액	집행 액	이월 액

기 타			계			불용액	12월말 현재 공정	완 공 예정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별지 제34호 서식]

과오납금현금반환명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랍.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위 금액을 본명령 서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기 바랍.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위 금액을 채권자 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별지 제35호 서식]

과 오납금계좌반환명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생년월일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생년월일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생년월일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①			
징수관	귀하		

[별지 제50-1호 서식]

(채무상환)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분임재무관	재무관		연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출과목					
발 의		인	조 직			발 의 인	
원인행위부 기 재		인	정 책					인
				단 위			지출부기재 인	
				세 부					인
				편성목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인	
				통계목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권자	주 소 상 호		성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앞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뒷면)

[별지 제55-1호 서식]

(계좌·현금) 지급명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 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명령번호	명령구분	입금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1	1234	현금	고지서	홍길동	농협	123456789		
						홍길동		
2	1235	계좌	계좌이체	홍길순	농협	123456789		
						홍길순		
3	1236	현금+계좌	계좌이체	홍길애	농협	123456789		
						홍길애		
: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8호 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62호 서식]

자금운용기록부

연월일	적요	기관명	지				환				잔액	비고		
			정기 예금	MMDA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1)	정기 예금	MMDA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2)

[별지 제63-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xx-xxxxx-xxxxxxx
금 _____ 원(금 _____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xx-xxxxx-xxxxxxx
금 _____ 원(금 _____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납부자주소 _____	
성 명 _____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귀하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xx-xxxxx-xxxxxxx
금 _____ 원(금 _____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_____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 은행	xxxx-xx-xxxxxxx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를 하도록 한다.

1. 분청

<신 설>

가. ~ 타. (생략)

파. (생략)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자

<신 설>

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

- 가. 회계책임관 : 총무국장
- 나. ~ 파. (현행 가목부터 타목까지와 같음)
- 하. (현행 파목과 같음)

<삭 제>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2. ~ 5. (생략)

②·③ (생략)

④ 회계관계공무원의 휴가·출장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이 대신한다. <단서 신설>

⑤ (생략)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 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생략)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

1. (현행과 같음)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4. (생략)

② (생략)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또는 토지매입,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2. ----- 보조금 -----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

1. ----- 1억원 이하인 공사 -----

5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

2. -----

그 -----

3. -----
----- 500만원 -----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백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1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③ (생략)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생략)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의회사무국장, 주관 실·과장과 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정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략)

② 제1항의 예산안에 붙일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

② -----

1. ----- 3천만원 -----
----- 2천만원 -----
500만원이하 물건-----

2. (현행과 같음)

3. -----
- 50만원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총무국장과 재정과장-----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3조(예산안의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9조에 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② (생략)

③ 기획실장은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

 -----.

제13조(예산안의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

 ----- 제1관서 -----
 -----.

② ----- 제1관서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예산안의 수정) -----

 ----- 제1관서 -----
 -----.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 제1

관서의 -----

을 때에는 시장의 결재(이 경우
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 실·과장 및 관
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
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
장 또는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
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
요구서와 같이 기획실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7조
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 월
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 계
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
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
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실장
과 재정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본청 실·과 및
관서의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

----- 제1
관서의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
법」 제50조제1항-----

-----.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
----- 제1관서-----
----- 징수계획서-----
----- 집행·지출계획서-----

-----.

② -----
제1관서의 -----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관서와 읍·면·동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에게 집행하려 할 때에는 기획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재정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면·동에 재배정하려 할 때에는 기획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재정과

-----.

③ -----

-----.

- 통합지출관 -----
-----.

④ -----

-----.

----- 기획실장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실장과 재정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및 관서의 지출내용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검사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을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취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정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

제26조(집행상황 조사) -----

- 이상 검사-----.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 날까지 -----

-----.

② -----

-----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 -----
----- 날부터 10일 -----

----- 통합지출관, 지출원 및 제1관서-----
-----.

제28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 제1관서-----

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이 필요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생략)

② 재정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 제1관서-----
통합지출관, 지출원-----.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
----- 제1관서-----

② -----

----- 제1관서-----
통합지출관, 지출원-----
-----.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16조제3항-----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② (생략)
<신 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생략)
<신 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려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23조-----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 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

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 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략)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② (생략)

③ 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생략)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재정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 월

-----.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 -----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징수보고서) ① ----- 영 제30조-----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통합지출관----- 제1관서-----

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 ② (생략)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 2. 운영수당 중 일직비·숙직비
-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 5. 공무원 여비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통합지출관, 지출원 및 출납원-----

-----.

다만, 영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잘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제51조(지급명령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발생-----.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53조제2항제3호-----

-----.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명령 발행요건) ① --

----- 경비
는 -----

-----.

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시 명의의 계좌번호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⑥ (생략)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 (생략)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생략)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을 승인(별지 제109호서식)할 때에는 승인내역을 재정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정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을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 ③ (생략)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⑥ (현행과 같음)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 영 제26조-----
- 행정안전부장관-----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합지출관-----

③ 통합지출관-----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재정과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삭 제

제74조(자금운용) ① ~ ③ (생략)

④ 자금의 관리는 재정과장이 주관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따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시금고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를 준용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조례 및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별표 4의 이자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통합지출관 -----
-----.

제74조(자금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 -----.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

----- 영 제51조제1항 -----
-----.

② -----
----- 시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 -----
-----.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

----- 행정안전부장관 -----
-----.

② (생략)

제87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 그 밖의 관서는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6조(인계의 절차) ① (생략)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고, 인수자가 입회하여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인계·인수한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현금의 보관) ① -----
----- 시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

-----.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한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인계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수년월일과

날짜와 “인계·인수를 마침”이라고 적어 인계·인수자 공동으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에 따른 시금고 취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략)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은 금고설치약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03조(인감의 상호 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지출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호서식)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6조(수납절차) ①·② (생략)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적고 -----

-----.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

-----.

1.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9조-----
----- 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
금고설치지정-----
- 영 제48조부터 제49조 규정-

-----.

1. ~ 4. (현행과 같음)

제103조(인감의 상호 제출) ① --
----- 출납원의

-----.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수납절차) ①·② (현행)

략)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
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
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
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
금처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8조(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
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
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
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
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
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지급
완료”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0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
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
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
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권자
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과 같음)

③ -----

----- 현금납입-----

-----.

제108조(지급절차) ① -----
----- 현금지급
명령 -----
----- 현금지급명령
통지서-----
-----.

② -----
-----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
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지급
완료”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송금지급절차) -----
----- 계좌지급
명령-----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1조(집합지급명령)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를 준용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통상지급명령이 망가져 통상지급명령 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5. (생략)

-----.

<삭 제>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

-----.

1. (현행과 같음)
2. 현금지급명령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

<삭 제>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고치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

② (생략)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시금고 사무의 감독은 재정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106조에 따른 시금고에 대한 검사는 재정과장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적은 사항-----

-----.

7. ----- 현금지급명령통지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
----- 현금지급명령통지 -----

-----.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
----- 관리·감독 -----
-----.

② 영 제50조-----
----- 통합지출관-----
-----.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② (생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등)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백만원 이하 영수인은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9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등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행정안전부 예규)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이하 -----
----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

-----.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

---. -----

--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

② (현행과 같음)

제129조(과목경정 등) ① -----
----- 시금고에 -----
----- 적은 -----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는 관계징수관 공동서명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려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은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 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붙여 매

 ----- 시금고에 -----

② -----
 ----- 동일회계 내에 -----

③ -----

 ----- 시금고에 -----
 ----- 시금고에 -----

④ (현행과 같음)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

분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 재정과장은 제1항의 지
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
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
(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
증명서를 붙여 매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본청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
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
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
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외현금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
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
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
함한다)은 영 제108조에 따른
시의 부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
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

----- 통합
지출관-----.

② 통합지출관-----

-----.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

----- 통합지출관-----
-----.

② (현행과 같음)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
서) -----

----- 통합지출관-----.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 「지방재정법 시행
령」 제108조----- 행정안전부장
관-----

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② (생략)

<신설>

제150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가 훼손, 손실 및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신설>

--.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갖춰 두고 같이 쓸 수 있다.

제150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

② -----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행정안전부장관-----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156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

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 1.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 직에 임명된 공무원
- 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계공무원
- 3. 제1호와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신 설>

제157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

제156조 · 제157조 (생략)

<신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영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일치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신설>

제159조 (생략)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63조 · 제164조 (현행 제156조 및 제157조와 같음)

제158조(재정보증 한도액) 제1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65조(국가규정의 준용) -----

----- 관하여는-----

-----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장관

제15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1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

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

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5

8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한

다.

제166조 (현행 제159조와 같음)

<신 설>

제160조(그 밖의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60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7조(그 밖의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

-- 행정안전부장관-----
-----.

제161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신 설>

<신 설>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려는 경우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62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제11장 보칙

현 행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 분 조 직	예산과목						공 사 기 간	예 산 액	공사비			시도비			보상비 지장물이전비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계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기 타			계			불 용 액	2월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 월 사 유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개 정 안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 분 조 직	예산과목						공 사 기 간	예 산 액	공사비			시도비			보상비 지장물이전비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계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월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 월 사 유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4호 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통상 과오납금 반환명령</p> <p style="text-align: center;">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p> 고서												[별지 제34호 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과오납금 현금 반환명령</p> <p style="text-align: center;">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p> 서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			성명			등록			자번호			과목			회계			세목			부과			년도			코드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			성명			등록			자번호			과목			회계			세목			부과			년도			코드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랍.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			성명			등록			자번호			과목			회계			세목			부과			년도			코드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위 금액을 본명 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			성명			등록			자번호			과목			회계			세목			부과			년도			코드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위 금액을 채권자 에게 반환 하였고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			성명			등록			자번호			과목			회계			세목			부과			년도			코드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랍.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			성명			등록			자번호			과목			회계			세목			부과			년도			코드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위 금액을 본명명 령서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기 바랍.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			성명			등록			자번호			과목			회계			세목			부과			년도			코드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위 금액을 채권자 에게 반환 하였고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관			항			목			관			항			목			관			항			목			관			항			목			징수관 귀하														

현 행

[별지 제35호 서식]

송금과오납금반환명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
고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년도</td><td></td></tr> <tr><td>회계</td><td>○○징수관 주관</td></tr> <tr><td>채성명</td><td></td></tr> <tr><td>채권주민등자</td><td>록번호</td></tr> <tr><td>과목</td><td></td></tr> <tr><td>회계년도</td><td>세목코드 부과번호</td></tr> <tr><td>환부금</td><td>이자 총당</td></tr> <tr><td>지급금액</td><td></td></tr> <tr><td>은행명</td><td></td></tr> <tr><td>예금주</td><td></td></tr> <tr><td>계좌번호</td><td></td></tr>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tr> <tr><td>담당자</td><td>담당 징수관</td></tr> <tr><td>관</td><td>항 목</td></tr> </table>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성명		채권주민등자	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년도</td><td></td></tr> <tr><td>회계</td><td>○○징수관 주관</td></tr> <tr><td>채성명</td><td></td></tr> <tr><td>채권주민등자</td><td>록번호</td></tr> <tr><td>과목</td><td></td></tr> <tr><td>회계년도</td><td>세목코드 부과번호</td></tr> <tr><td>환부금</td><td>이자 총당</td></tr> <tr><td>지급금액</td><td></td></tr> <tr><td>은행명</td><td></td></tr> <tr><td>예금주</td><td></td></tr> <tr><td>계좌번호</td><td></td></tr>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tr> <tr><td>징수관 직</td><td>성명</td></tr> <tr><td>①</td><td></td></tr> <tr><td>금고 귀하</td><td></td></tr> </table>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성명		채권주민등자	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년도</td><td></td></tr> <tr><td>회계</td><td>○○징수관 주관</td></tr> <tr><td>채성명</td><td></td></tr> <tr><td>채권주민등자</td><td>록번호</td></tr> <tr><td>과목</td><td></td></tr> <tr><td>회계년도</td><td>세목코드 부과번호</td></tr> <tr><td>환부금</td><td>이자 총당</td></tr> <tr><td>지급금액</td><td></td></tr> <tr><td>은행명</td><td></td></tr> <tr><td>예금주</td><td></td></tr> <tr><td>계좌번호</td><td></td></tr>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td></tr>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tr> <tr><td>금고 ①</td><td></td></tr> <tr><td>징수관 귀하</td><td></td></tr> </table>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성명		채권주민등자	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①		징수관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성명																																																																																												
채권주민등자	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성명																																																																																												
채권주민등자	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성명																																																																																												
채권주민등자	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①																																																																																												
징수관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35호 서식]

과오납금계좌반환명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
고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년도</td><td></td></tr> <tr><td>회계</td><td>○○징수관 주관</td></tr> <tr><td>채성명</td><td></td></tr> <tr><td>채권주민등자</td><td>록번호</td></tr> <tr><td>과목</td><td></td></tr> <tr><td>회계년도</td><td>세목코드 부과번호</td></tr> <tr><td>환부금</td><td>이자 총당</td></tr> <tr><td>지급금액</td><td></td></tr> <tr><td>은행명</td><td></td></tr> <tr><td>예금주</td><td></td></tr> <tr><td>계좌번호</td><td></td></tr>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tr> <tr><td>담당자</td><td>담당 징수관</td></tr> <tr><td>관</td><td>항 목</td></tr> </table>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성명		채권주민등자	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년도</td><td></td></tr> <tr><td>회계</td><td>○○징수관 주관</td></tr> <tr><td>채성명</td><td></td></tr> <tr><td>채권주민등자</td><td>록번호</td></tr> <tr><td>과목</td><td></td></tr> <tr><td>회계년도</td><td>세목코드 부과번호</td></tr> <tr><td>환부금</td><td>이자 총당</td></tr> <tr><td>지급금액</td><td></td></tr> <tr><td>은행명</td><td></td></tr> <tr><td>예금주</td><td></td></tr> <tr><td>계좌번호</td><td></td></tr>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tr> <tr><td>징수관 직</td><td>성명</td></tr> <tr><td>①</td><td></td></tr> <tr><td>금고 귀하</td><td></td></tr> </table>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성명		채권주민등자	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년도</td><td></td></tr> <tr><td>회계</td><td>○○징수관 주관</td></tr> <tr><td>채성명</td><td></td></tr> <tr><td>채권주민등자</td><td>록번호</td></tr> <tr><td>과목</td><td></td></tr> <tr><td>회계년도</td><td>세목코드 부과번호</td></tr> <tr><td>환부금</td><td>이자 총당</td></tr> <tr><td>지급금액</td><td></td></tr> <tr><td>은행명</td><td></td></tr> <tr><td>예금주</td><td></td></tr> <tr><td>계좌번호</td><td></td></tr>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td></tr>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tr> <tr><td>금고 ①</td><td></td></tr> <tr><td>징수관 귀하</td><td></td></tr> </table>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성명		채권주민등자	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①		징수관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성명																																																																																												
채권주민등자	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성명																																																																																												
채권주민등자	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성명																																																																																												
채권주민등자	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①																																																																																												
징수관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0-1호 서식]

(부채상환)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연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담 당	분임재무관			
		세출과목		
발 의	...	인 조 직	발 의	...
원인행위부 기 재	...	인 단 위	지출부기재	...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권자	주 소 상 호	성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성명	월 일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앞면)

[별지 제50-1호 서식]

(채무상환)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연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담 당	분임재무관			
		세출과목		
발 의	...	인 조 직	발 의	...
원인행위부 기 재	...	인 단 위	지출부기재	...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권자	주 소 상 호	성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성명	월 일 인
주관과				
취급자 인				

(앞면)

시 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뒷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뒷면)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5호 서식]

통상 지급 명령

<p>통상 NO. 000000</p> <p>통상 지급 원부</p> <p>년도 회계</p> <p>NO</p> <p>과목</p> <table border="1"> <tr><td>금 액</td><td></td></tr> <tr><td>발행년월일</td><td></td></tr> <tr><td>채 권 자</td><td></td></tr> <tr><td>적 요</td><td></td></tr> </table>	금 액		발행년월일		채 권 자		적 요		<p>절 취 선</p>	<p>통상 NO. 000000</p> <p>현금지급명령통지</p> <p>년도 회계</p> <p>NO</p> <p>채권자 계좌 과목</p> <p>금 원(금 원)</p> <p>년 월 일 000지출원 금고 귀하</p>	<p>절 취 선</p>	<p>통상 NO. 000000</p> <p>통상 지급 명령</p> <p>년도 회계</p> <p>NO</p> <p>채권자 계좌 과목</p> <p>금 원(금 원)</p> <p>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 000지출원 금고 귀하</p>
금 액												
발행년월일												
채 권 자												
적 요												
1cm	6.8cm	8cm	17cm	9.7cm								

<별지 제60호서식>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5-1호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송금·집합) 지급명령</p> 20 회계연도 회계						[별지 제55-1호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계좌·현금) 지급명령</p> 20 회계연도 회계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px;"></td> <td style="width: 40px; text-align: center;">지출원</td> <td style="width: 40px; text-align: center;">금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결재</td> <td style="height: 40px;"></td> <td style="height: 40px;"></td> </tr> </table>							지출원	금고	결재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px;"></td> <td style="width: 40px; text-align: center;">지출원</td> <td style="width: 40px; text-align: center;">금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결재</td> <td style="height: 40px;"></td> <td style="height: 40px;"></td> </tr> </table>							지출원	금고	결재		
	지출원	금고																					
결재																							
	지출원	금고																					
결재																							
(단위 : 원)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 번 호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연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용 기 관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금 용 기 관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1	1234	현금	고지서	홍길동	농협	123456789										
													홍길동										
							2	1235	계좌	계좌 이체	홍길순	농협	123456789										
													홍길순										
							3	1236	현금+계 좌	계좌 이체	홍길애	농협	123456789										
													홍길애										
합 계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1. 구분란에는 송금과 집합 지급명령을 표시. 2. 집합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합지급 합계금액과 항목별 금액을 각각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에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년 월 일						년 월 일																	

현 행

[별지 제58호 서식]
일상경비교부통지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일상경비교부액			비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58호 서식]
일상경비교부통지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일상경비교부액			비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시 보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7호서식] 일상경비교부서											[별지 제57호서식] 일상경비교부서															
제 호					년 월 일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 ○도지사						수 신 :					발 신 : ○ ○도지사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산 과 목					예산액	예산 교 부 액			잔 액	비 고	구분 조직	예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기 교부	금회 교부	합 계											

현 행

[별지 제58호서식]
 일상경비교부통지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일상경비교부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58호서식]
 일상경비교부통지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일상경비교부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63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적용)</p>			<p>[별지 제63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p>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제 호</td> <td style="width: 50%;">년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td> <td></td> </tr> <tr> <td>금</td> <td>원(금 원)</td> </tr> <tr> <td colspan="2">원)</td> </tr> <tr> <td>정리구분</td> <td></td> </tr> <tr> <td>건 명</td> <td></td> </tr> <tr> <td>현 금</td> <td></td> </tr> <tr> <td>예약기간</td> <td></td> </tr> <tr> <td>증 권 명</td> <td></td> </tr> <tr> <td>원권 매 원</td> <td></td> </tr> <tr> <td>원권 매 원</td> <td></td> </tr> <tr> <td>원권 매 원</td> <td></td> </tr> <tr> <td>계 매 원</td> <td></td> </tr> <tr> <td colspan="2">위와 같이 납부함.</td> </tr> <tr> <td>년 월 일</td> <td></td> </tr> <tr> <td colspan="2">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금고 귀하</td> </tr> </table>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약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제 호</td> <td style="width: 50%;">년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td> <td></td> </tr> <tr> <td>금</td> <td>원(금 원)</td> </tr> <tr> <td colspan="2">원)</td> </tr> <tr> <td>정리구분</td> <td></td> </tr> <tr> <td>건 명</td> <td></td> </tr> <tr> <td>현 금</td> <td></td> </tr> <tr> <td>예약기간</td> <td></td> </tr> <tr> <td>증 권 명</td> <td></td> </tr> <tr> <td>원권 매 원</td> <td></td> </tr> <tr> <td>원권 매 원</td> <td></td> </tr> <tr> <td>원권 매 원</td> <td></td> </tr> <tr> <td colspan="2">납부자주소 성 명</td> </tr> <tr> <td colspan="2">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td> </tr> <tr> <td>년 월 일</td> <td></td> </tr> <tr> <td colspan="2">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td> </tr> <tr> <td style="width: 25%;">결 재</td> <td style="width: 25%;">담당 자</td> <td style="width: 25%;">출납원</td> <td style="width: 25%;">계장 과장</td> </tr> </table>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약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결 재	담당 자	출납원	계장 과장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제 호</td> <td style="width: 50%;">년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td> <td></td> </tr> <tr> <td>금</td> <td>원(금 원)</td> </tr> <tr> <td colspan="2">원)</td> </tr> <tr> <td>정리구분</td> <td></td> </tr> <tr> <td>건 명</td> <td></td> </tr> <tr> <td>고지부서</td> <td></td> </tr> <tr> <td colspan="2">위와 같이 납부함.</td> </tr> <tr> <td>년 월 일</td> <td></td> </tr> <tr> <td colspan="2">수납은행 : 은행</td> </tr> <tr> <td colspan="2">(계좌번호 :)</td> </tr> <tr> <td style="width: 25%;">결 재</td> <td style="width: 25%;">고지 번호</td> <td style="width: 25%;">현금 종류</td> <td style="width: 25%;">납부자</td> <td style="width: 25%;">고지 금액</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td> </tr> </table>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결 재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제 호</td> <td style="width: 50%;">년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td> <td></td> </tr> <tr> <td>금</td> <td>원(금 원)</td> </tr> <tr> <td colspan="2">원)</td> </tr> <tr> <td>정리구분</td> <td></td> </tr> <tr> <td>건 명</td> <td></td> </tr> <tr> <td>고지부서</td> <td></td> </tr> <tr> <td colspan="2">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td> </tr> <tr> <td colspan="2">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td> </tr> <tr> <td>년 월 일</td> <td></td> </tr> <tr> <td colspan="2">위와 같이 영수함.</td> </tr> <tr> <td>년 월 일</td> <td></td> </tr> <tr> <td colspan="2">은행 금고 인</td> </tr> <tr> <td style="width: 25%;">결 재</td> <td style="width: 25%;">고지 번호</td> <td style="width: 25%;">현금 종류</td> <td style="width: 25%;">납부자</td> <td style="width: 25%;">고지 금액</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납부자 귀하</td> </tr> </table>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결 재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약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약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결 재	담당 자	출납원	계장 과장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결 재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결 재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현 행

[별지 제63-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x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x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xx-xxxxx-xxxxxx

금 _____ 원(금 _____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금 _____ 원(금 _____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금 _____ 원(금 _____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위와 같이 납부함.

납부자주소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납부자

년 월 일

금고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 은행	x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 은행	x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 은행	xxxx-xx-xxxxxxx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 정 안

[별지 제63-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x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x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xx-xxxxx-xxxxxx

금 _____ 원(금 _____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금 _____ 원(금 _____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금 _____ 원(금 _____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위와 같이 납부함.

납부자주소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납부자

년 월 일

금고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 은행	x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 은행	x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 은행	xxxx-xx-xxxxxxx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	-------

[별지 제80호서식]

집합지급금액 명세표

집합지급액 제 호			년 월 일			
지급명령 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채 권 자		금 액	비 고
			주소	성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별지 제86호서식> ~~<삭제>~~

남원시 공고 제2017 -1630호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으로 일원화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3.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별첨

4.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재정과, 주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063-620-6656), 팩스(063-620-671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나.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마. 채권관리관

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 사용 공무원

사. 재산관리관

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자.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차. 회계책임관

-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分任者)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관계 법령, 정관, 사규(社規) 등에 규정된 사람
 - 나. 관계 법령, 정관, 사규 등에 따라 임명된 사람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붙임 2

현행 조례

□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4,2016.5.1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5.13>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5.13>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5.13>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5.13>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검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검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검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3>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5.13>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2016.5.13>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5.13>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6.5.13>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은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5.13>

-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 2016.5.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24>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하고, “채무관리관” 을 “부채관리관” 으로 한다.

②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한다.

③ 남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분임경리관” 을 “분임재무관” 으로 한다.